

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-23호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하역업체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-21호에 대해 정정 재공고합니다.

2025년 02월 13일
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

공 시 송 달 서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업) 실태조사 결과,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,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처분의 제목: 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업) 행정처분

2. 청문대상자

사업의 종류	업체명	대표자	주소
항만하역업	한일항운	임*수	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533-10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

사업의 종류	업체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내용	법적근거
항만하역업	한일항운	사업수행실적 없음 (2차 위반)	등록취소	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
4.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

- 가. 의견은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의견제출서는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(붙임 2)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
- 다. 다만,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.
- 라.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 방법

- 가.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(방문·우편·팩스),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,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- 방문 또는 우편: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,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
 - 팩스: 061-280-1666
 - 정보통신망: sunf77@korea.kr
- 나. 우편, 팩스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(061-280-1663)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 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.(신분증 지참)

6. 의견제출기한: 2025. 3. 18.(화) 15시까지

7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 - 당사자등의 배우자, 직계 존손·비속 또는 형제자매
 -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
 - 변호사

-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(청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의 허가를 받은 자
 -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
- 나.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,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(붙임 3)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다. 당사자 등이 대표자(대리인)를 선정(선임)하였을 때는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(붙임 4)에 따라 대표자 선정·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라. 당사자 등이 대표자(대리인)을 해임(변경)하였을 때에도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(붙임 5)에 따라 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.

8. 기타사항

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**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**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,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(061-280-1663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1. 청문실시통지서 1부.
 2. 의견제출서 서식 1부.
 3.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.
 4.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.
 5. 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통지서 1부.
 6. 기피 신청서 1부.
 7. 청문공개 신청서 1부.
 8. 증거 조사 신청서 1부. 끝.

[붙임 1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행정기관명

수신자 한일항운

(경유)
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업) 등록취소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한일항운				
	주소	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533-10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사업수행실적이 1년 이상 없음(2차 위반) ['23년 실적없음('24.3.5.~6.4., 사업정지 3개월) / '24년 실적없음]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업) 등록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제1항제4호 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 [별표 5]					
청문실시	기관명	목포지방해양수산청	부서명	항만물류과	담당자	박재은
	주소	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			전화번호	061-280-1663
	일시	2025년 3월 18일(화) 15시 부터 16시 까지(1시간)			장소	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소회의실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계장			
	성명	김형진				

<청문시 유의사항>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,

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



[붙임 2]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3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
신청 내용	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		
	당사자등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	생년월일
주소 (전화번호:)			
당사자등과의 관계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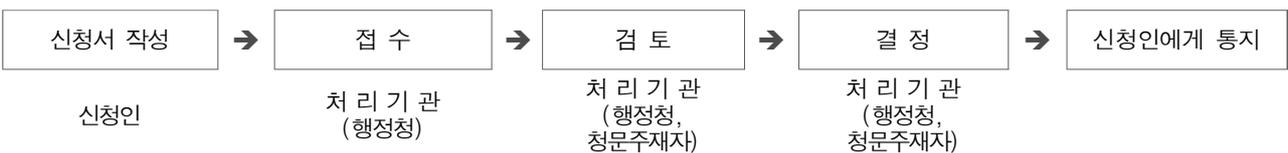
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

※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.

[붙임 5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[] 대표자 ([] 해임 [] 변경) 통지서
[] 대리인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통지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통지 내용	①대표(대리)한 행정절차의 내용	
	당사자 등	성명(명칭)
		주소
	해임(변경)된 대표자 (대리인)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
주소		(전화번호:)
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사유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통지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3.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6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기피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내용	① 청문 제목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	
신청이유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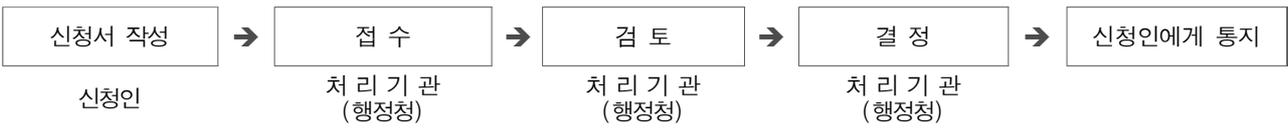
귀하

첨부서류	입증가능한 자료 첨부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

[붙임 7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청문공개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내용	① 청문 제목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	
신청이유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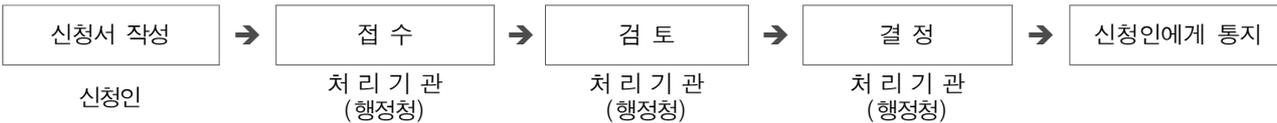
청문주재자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

[붙임 8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증거조사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신청내용	① 청문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증명할 사실	
증거조사의 방법		

「행정절차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청문주재자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유의사항

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